

인천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3나77934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3나7793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가단22578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선 담당변호사 공준식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윤희

변론 종결2024. 10. 15.

판결 선고2024. 12. 10.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가단225787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들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하며"를 "하고, 소외 E에게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비용 때문에 공사대금이 증가하였음에도 원고에게는 이를 숨기고"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취소한다고"를 "취소 내지 해제한다고1) "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2021. 12. 10. 피고에게 민법 제673조에 의한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및 변경합의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가 도달하였고, 피고는 계약만 체결한 채 착공조차 하지 않았는바 피고가 입은 손해는 없으며, 설령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들이지 않게 된 피고의 노력을 타에 사용하여 소득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이나 과실로 인하여 얻지 못한 소득이나 준비해준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타에 사용 또는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은 손해액 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소외 E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개비로 건설공사에서 수주 및 기타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정당한 비용이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다.

나. 판단

1) 기망에 따른 취소, 해제 주장들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E에게 소개비 등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자재값이 인상되었다고 기망하였다거나, 피고가 위와 같이 E에게 지급한 소개비 부분이 부당하여 의도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이유들로 원고가 이 사건 변경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사실들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취소, 해제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 및 손익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처음으로 2021. 12. 10.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이전에는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의 취소 주장만 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존재를 다투고 있는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1. 12. 10.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해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들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범준

판사진희원

판사이형우

1)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당심에서 제출한 서면들의 기재내용과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선해한다.

2) 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2021. 12. 10.자 의사표시에 따른 해제를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과 별도로 이 부분 규정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